

【 7 】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조직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등 자치센터 운영의 원칙을 정함(안 제3조)
- 나.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외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다.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라.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수행등 자치센터의 기능을 정함(안 제5조)
- 마. 군수는 읍·면사무소에 자치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사.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아. 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 자.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차.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카.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함(안 제11조)
- 파. 군수와 읍·면장은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내용을 성실히 검토·운영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 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거.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운영 및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 너.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더. 위원중 간사1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러.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머.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재정규칙안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해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8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2000. 5.22부터 6.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부)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라 함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읍·면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읍·면장은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②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②군수는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한다.
-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①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분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센터 운영계획과 운영결과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③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